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8842
----------	-------

제안연월일 : 2026. 5.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2200470	김정호의원	2024.6.13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28	박 정의원	2024.11.13.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0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 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3.) 상정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 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13	김정호의원	2024.11.22.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 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3.24.)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 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644	윤준병의원	2024.12.18.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2.23.) 상정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3.24.)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5.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63	김선교의원	2025.3.12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4. 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16	김선교의원	2025.3.13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70	임미애의원	2025.12.5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5.12.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34	임호선의원	2025.12.23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6.1.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85	문금주의원	2026.1.28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6.2.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69	윤준병의원	2026.4.3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 소위 직접 회부(2026.4.9.)

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에서 위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4.23.)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상속이나 이농에 따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 농지가 방치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실정이며, 특히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

에 해당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대 분리된 가족 등에게 농지를 형식적으로 이전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농지 이용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농지 조사원의 법적 근거 및 토지등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지 관리 기본방침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을 고려하여,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변경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농산 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농업진흥구역에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상속·이농에 따른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함(안 제7조, 제23조제1항 및 제3항).
- 나. 농지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 제한되는 상대방을 추가함(안 제10조제3항).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설치를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사.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관리 대상 농지의 목표 면적을 산출할 때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기준’,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아.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가목 중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를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를 “처분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23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 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

를 청구할 수 있다”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2항 후단에”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유예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1402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를 “소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를 “한국농어촌공사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면적”을 “면적.”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정”을 “지정 및 해제”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이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제51조의2 중 “사람은”을 “사람과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은”으로 한다.

제5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제54조제1항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으로”를 “포함한다) 또는 농지조사원(제3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지조사원을 다른 사람의 토지 외의 장소에 출입하게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농지가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의6(비밀준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벌칙) 제54조의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2항에”를 “제11조제2항 후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제42조에”를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제42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아니하면”을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4, 제54조의5, 제54조의6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2조, 제3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의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제3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농지

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상속, 이농자의 소유 농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23조제1항제1호·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한다.

②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제11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로 한다.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 7. (생략)

② (생략)

<신설>

4의3. -----

제23조제1항제7호-----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
는 세대원

2.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3.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
는 단체

4.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
인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에 처분 대상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
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
지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명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신 설>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신 설>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③ -----제2항 후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
-.

④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에서-----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신 설>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 ③ (생략)

<신 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신 설>

<신 설>

법률 제21402호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시장·군수·자치구구청
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
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농지 소
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기간을 정하여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
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기간에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지 아
니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유예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1402호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도지사-----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

-----.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

-----.

1. -----제6호-----

2. ~ 6. (현행과 같음)

7. -----

가. -----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
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9. (생략)

② (생략)

<신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
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
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나. -----

----- 소유 -----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
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
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
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

2. -----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 ① -----

-----한국농어촌공사-----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 -----

-----.

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⑤ (생략)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후단 신설>

----.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면적. 이 경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신설>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또는 시·구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음 연도-----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

-----.

⑥ -----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원은-----
-----.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① -

· 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1. ~ 3. (생략)
 - ② ~ ⑥ (생략)
- <신설>

 -----포
 함한다) 또는 농지조사원(제3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만 해당한다)으로

다만, 농지조사원을 다른 사람의 토지 외의 장소에 출입하게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54조의5(농지조사원의 채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농

지가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6(비밀준수 의무) 제54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0조의2(벌칙) 제54조의6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제63조(이행강제금) ① -----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3. (생략)

<신설>

1. -----

 -----제11조
제2항 후단에-----

2. 3.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제7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

⑨ 제7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